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보호지역 내 추가 발생 시 살처분 범위 적용 및 방역관리 방안 알림

1. 관련: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10547('21.11.16.)호, -10472('21.11.13.)호 및 -10422('21.11.12.)호
 2. 우리 부는 '21.11.12일부터 '21.11.26일까지 2주간 고병원성 AI 발생 시 적용하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 중으로, 보호지역 내 추가 발생 시 살처분 적용 범위 및 방역관리 방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각 지자체는 동 방안에 따른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 (예방적 살처분 범위)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전 가금 축종 + 오리 사육농장에서 발생 시 발생농장 반경 500m~1km 내 오리 사육농장 추가 예방적 살처분

붙임 보호지역 내 추가 발생 시 살처분 범위 적용 및 방역관리 방안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구제역방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방역감시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역학조사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 서울특별시(동물보호과장), 부산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농산유통과장), 인천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광주광역시(생명농업과장), 대전광역시(농생명정책과장), 울산광역시(농축산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동물위생방역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강원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전라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농협경제지주 친환경방역부, 대한양계협회장, (사)한국육계협회, (사)한국오리협회,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사)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주무관 강호성 사무관 김석재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홍기성
전결 2021. 11. 18.

협조자

시행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2021. 11. 18.) 접수
10645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57 팩스번호 044-863-9210 / 1zzibang@korea.kr / 대국민 공개